

#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‘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 촉구 결의안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지난 3월 파업 당시, 서울 시내버스(7,382대)의 97.6%에 해당하는 7,210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.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,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

□ 반면,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·퇴근 시간

기준 100%, 그 외 시간대는 70~80%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'필수공익사업'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

-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.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,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.
-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'준공영제'를 시행하고 있으나,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
- 이에,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'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 촉구 결의안'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시내버스는 1997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,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, 지정 해제됐습니다. 또다시 노조의 일

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, 부디 본  
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, 의결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